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제877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0. 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10.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11. 11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급증하는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사항 등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위원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 여성발전소위원회, 의료급여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어 세분화·전문화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난립 및 위원회의 중복 위촉 등으로 행정 및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지난 5. 20 제정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일부 통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 당초 조례안인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 3. 19 제1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조례안 내용중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으며, 2004. 4. 28 제1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수정가결 후 4. 29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2004. 5. 20 군수가 재의 요구하여 2004. 6. 17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 심의하여 부결되었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명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
- 안 제1조중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로 하고, 안 제2조 본문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다음 각호의 기능”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되 동조 제5호중 “의료급여법 제6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함.

- 안 제3조제1항중 “30인 이내로”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며, 동조동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되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4.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5.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8. 심사결과

- 2004. 11.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덧붙임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